



## 도기영

법무법인 국민 대표변호사  
☎ 02-470-8812 viplawyer@hanmail.net  
www.kookminlaw.com

### 〈필자약력〉

-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지적재산권법학과 수료
-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형사조정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 강동구상공회 이사
- 성남시 치과의사회 고문변호사
- 고려대학교 국제공의법률상담소 자문위원
- 국민대학교 법률상담센터 협력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개인파산·면책지원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심사위원회 간사, 환경보전특별위원회 위원
- 시립관악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서울중랑경찰서 보안협력위원

## CASE 1

### 도로 차량 소음피해 및 방음 대책

#### - 쟁점

도로가 개설된 이후에 아파트가 신축되고 주민들이 입주하였는데, 그 주민들이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경우, 도로의 설치·관리자와 아파트를 신축한 건축회사가 아파트 주민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

#### - 판결요지

#####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 부산광역시는 동서고가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고, 원고 ○○건설주식회사(이하 원고 ○○건설이

라 한다)는 이 사건 도로와 17.1m 정도 떨어진 곳에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였다.

나. 피고들은(무변론 피고들 제외) 이 사건 아파트 각 세대의 소유자들 및 그 가족들로서 이 사건 아파트 각 세대에 입주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다. 이 사건 도로에서 차량통행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이 이 사건 아파트의 주소음원이다.

라. (1) 소음·진동규제법상 도로소음 한도는 주거 지역의 경우 주간 68dB(A), 야간 58dB(A)이고,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소음기준에 관하여 도로변지역 중 전용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은 주간 65dB, 야간 55dB이다.

(2) 피고들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한 재정절차 중에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한 결과, 이 사건 아파트 중 피고들이 거주하는 세대의 야간 등가소음도는 모두 65dB(A) 이상이다.

마. (1) 피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아파트 8개동 311 세대의 934명은 원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분진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인 피해를 입고 있음을 이유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을 하였다.

(2) 이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야간 등가소음도가 65dB(A) 이상인 경우에는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소음으로 인한 피해배상액을 지급하고, 터널방음벽 설치 등의 방음대책을 강구하라’는 내용의 재정을 하였다.

#####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가. 원고 부산광역시에 대하여

원고 부산광역시는 이 사건 도로의 설치·관리자로서 이 사건 도로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

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피고들이 거주하는 세대의 야간 등가소음도가 65dB(A) 이상으로 환경정책기본법과 소음진 동규제법 등의 행정법규가 요구하는 주거지역의 야간 소음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도로가 하루 통행량이 약 86,361 대에 이르는 공공도로인 점과 피고들이 이 사건 도로가 개통된 이후에 건축된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한 점 등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피고들이 입은 피해는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수인한도를 넘는다 할 것이고, 원고 부산광역시가 설치·관리하는 이 사건 도로에는 그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 부산광역시는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거나 방음벽 등을 설치하는 등으로 그 소음을 수인한도 내로 저감시킬 방음대책을 강구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 나. 원고 ○○건설에 대하여

이 사건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피고들이 입은 침해가 수인한도를 넘는 점, 원고 ○○건설은 이 사건 도로 옆에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분양한 자로서 장차 이 사건 도로의 교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소음도가 증가하리라는 것을 예상하였거나 충분히 예상가능하였던 데다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을 당시 부산 ○○구청에 이 사건 아파트에 주민들이 입주한 후 이 사건 도로와 관련한 소음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원고 ○○건설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그 민원을 해결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는 매매목적물로서 거래상 통상 갖추어야 하거나 당사자 사이의 특약에 의하여 보유하여야 할 품질이나 성질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거나 또는 이 사건 도로 옆에 이 사건 아파트를 건

축·분양한 원고 ○○건설로서는 이 사건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방음대책을 강구하는 등으로 피고들로 하여금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 환경조건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아파트의 상태를 유지할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 ○○건설도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거나 방음벽 등을 설치하는 등으로 그 소음을 수인한도 내로 저감시킬 방음대책을 강구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 다.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들은 이 사건 도로가 개설되어 차량 통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았거나 매수하여 거주한 자들이므로, 피고들 스스로도 장차 교통량의 증가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태에서 분양을 받았고, 이 사건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이 사건 아파트 건설 후 교통량의 증가에 따라 부수되는 자연스런 결과이므로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들이 이 사건 도로가 개설되어 차량 통행이 이루어진 이후에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들이 이 사건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용인하였다고 보기是很 어렵다.

#### -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이미 도로가 개설된 이후에 아파트가 신축되고 주민들이 입주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도로에서 나는 소음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에는, 도로의 설치·관리자와 아파트를 신축한 건설회사는 아파트 주민들이 입은 그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거나 방음벽 등을 설치하는 등으로 그 소음을 수인한도 내로 저감시킬 방음대책을 강구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출처: 대법원 홈페이지)

## CASE 2

## 도로 확장공사로 인한 축사의 피해

## [의뢰인 甲의 질문내용]

甲은 고속도로 인근에서 축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년 전 2차선이던 고속도로를 6차선으로 확장공사를 하는 바람에 애초 90m 정도 떨어져 있던 축사와 고속도로 사이의 거리가 30m 정도로 가까워졌습니다. 또한 축사와 고속도로 사이에 있던 언덕이 확장공사로 인해 소멸되어 고속도로에서 나는 소음과 먼지가 더욱 심해져서 축사의 운영이 아예 불가능하게 되었고 결국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甲은 고속도로 관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 [법무법인 변호사의 답변]

적법시설이나 공용시설로부터 발생하는 분진, 소음, 진동, 악취 등 유해배출물로 인하여 인근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위법성의 판단기준에 관하여 대법원은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위법성은 관련행위 전체를 일체로만 판단해 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문제가 되는 행위마다 개별적·상대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므로 어느 시설을 적법하게 가동하거나 공용에 제공하는 경우에도 그로부터 발생하는 유해배출물로 인해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위법성을 별도로 판단해야 하고, 이러한 경우의 판단기준은 그 유해의 정도가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 한도(受忍限度)를 넘는 것인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99다55434 판결)

또한 적법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분진 등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하여 인근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원인제공사업장의 사업자는 귀책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배상책임이 있는지에 관하

여, 환경영정책기본법 제31조는 “① 사업장 등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사업자는 그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 ② 사업장 등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 어느 사업장 등에 의해 제1항의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각 사업자는 연대해 배상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위 법조항을 근거로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제1항 및 제3조 제1호, 제3호, 제4호에 의하면, 사업장 등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는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그 피해를 배상해야 하고, 위 환경오염에는 소음·진동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것도 포함되므로, 피해자들의 손해에 대해 사업자는 그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99다55434 판결).

결국, 대법원은 고속도로의 확장으로 인해 소음과 진동이 증가하여 인근 축사의 사업자가 폐업을하게 된 경우, 침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 보아 한국도로공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은 고속도로의 확장공사로 인한 소음, 먼지, 진동 등 환경오염으로 축사를 폐쇄하게 되었으므로 도로의 관리주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